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상위 관련법에 의거 추가,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고객들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추가, 신설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시설사용료 50% 감액 (안 제10조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환자 시설사용료 50% 감액(안 제10조7항)
 -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 시설사용료 50%감면 (안 제10조제8항)
- 사용료 감액 명문화(안 제10조제5항)
 - 1인 2종목 이상 신청 시 사용료의 20%할인
- 중복 감액 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 해소 (안 제10조제9항)
 -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문화

○ 동계 시설이용 시간 확대 【별표1】

- 야간사용은 18:00~22:00로 동계시간 (동계는 17:00~21:00) 삭제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 하고 “배우자”를 “유족증을 소지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20%”로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신설 한다.

- ⑦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 한다.
-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 한다.
- ⑨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한다.

별표1 본문 중 “(동계는 17:00~21:00)”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①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독립유공 자에우에 관한법
②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불우청소년, 장애인 (1~3급 동행 자 1인 포함),국가유공자(배우자,상이등급 1급 동행자1인 포함) 등에 대하여는 사용 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유족중 소지한 자, 상 이등급 1급 동행자 1인 포함)	· 5.18민주예 우에 관한법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1인 2종목이상 신청 시에는 <u>사용료</u> 를 할인 할 수 있다.	⑤ <u>사용료</u> 의 20%.....	· 사용료 감 면률 명문화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 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 한다.	· 관련 법에 의거 신설
<신설>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유족중, 특수임무공로 자중, 특수 임무 공로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 한다.	· 관련 법에 의거 신설
<신설>	⑨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의 감액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가 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한다.	· 중복 적용 요구에 따 른 민원 발 생 해소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별표 1(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요율표) ○ 시설사용료					□ 별표 1(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요율표) ○ 시설사용료					· 운영시간 연장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용목적</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요금</th></tr><tr><th>평일</th><th>토일 공휴일</th></tr><tr><td rowspan="4">체육관</td><td rowspan="2">체육행사</td><td>주간</td><td>90,000원</td><td>120,000원</td></tr><tr><td>야간</td><td>120,000원</td><td>150,000원</td></tr><tr><td rowspan="2">체육행사 이외</td><td>주간</td><td>120,000원</td><td>150,000원</td></tr><tr><td>야간</td><td>150,000원</td><td>180,000원</td></tr><tr><td rowspan="2">소극장 (예식장)</td><td>공연,교육, 행사</td><td>4시간 이내</td><td>40,000원</td><td>50,000원</td></tr><tr><td>예식행사</td><td>2시간 이내</td><td>70,000원</td><td>90,000원</td></tr></table>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평일	토일 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용목적</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요금</th></tr><tr><th>평일</th><th>토일 공휴일</th></tr><tr><td rowspan="4">체육관</td><td rowspan="2">체육행사</td><td>주간</td><td>90,000원</td><td>120,000원</td></tr><tr><td>야간</td><td>120,000원</td><td>150,000원</td></tr><tr><td rowspan="2">체육행사 이외</td><td>주간</td><td>120,000원</td><td>150,000원</td></tr><tr><td>야간</td><td>150,000원</td><td>180,000원</td></tr><tr><td rowspan="2">소극장 (예식장)</td><td>공연,교육, 행사</td><td>4시간 이내</td><td>40,000원</td><td>50,000원</td></tr><tr><td>예식행사</td><td>2시간 이내</td><td>70,000원</td><td>90,000원</td></tr></table>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평일	토일 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평일	토일 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평일	토일 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 (동계는 17:00~21:00) ※ 소극장 1시간 사용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평일 : 10,000원 토·일·공휴일 :12,000원으로 함.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운용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 ※ 소극장 1시간 사용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평일 : 10,000원 토·일·공휴일 : 12,000원으로 함.																																																																			

관 련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